



##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

이 상 규 (고신대학교)

### 시작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였다. 초기기독교회가 국가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에 대해서는 군복무와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하였다. 오늘은 중세이후 특히 16세기 개혁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세시대에는 교황권(Sacerdotium)과 황제권(Regnum)의 부단한 제휴와 대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권력다툼이 심각했다. 교회와 국가 간의 타협과 제휴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발전된 것이었다. 그 연원은 이미 330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천도한 때부터 로마교회의 세속 권력과의 타협은 배태되고 있었다. 로마를 중심으로 정치적, 군사적 힘이 동방으로 이동하고, 서로마제국이 패망하자(476) 로마교회는 어떤 다른 힘의 보호가 필요했다. 그래서 교회는 후일 프랑크 왕국(Frankish Kingdom)과 제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과정을 통해 교회와 국가가 타협, 제하게 된 역사를 정리한 후 16세기 이후 개혁교회 전통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던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역사적 배경: 중세에서의 국가와 교회

프랑크족의 클로비스의 개종(496)은 일반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기독교화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 간의 부단한 타협과 분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클로비스와 그 아들들의 통치하에서 프랑크족은 과거에 로마가 차지하였던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영토들을 정복한 뒤 ‘레그눔 프랑코룸’(Regnum Francorum), 곧 프랑크왕국을 수립하였다. 클로비스(Clovis, 465?-511, 481-511 재위)는 496년 성탄일에 그의 부하 3천명과 더불어 라임교회당(The Great Church of Rheims)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sup>1)</sup> 이 당시 집단 세례가 유행하였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 생활의 청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이교적 영향이 교회 내에 유입되었다. 프랑크족은 이 당시 유력한 족속으로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었다.

클로비스 사후 메로빙가(家) 왕들(Merovingian, 511-751)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정복 사업은 계속되었고 이들 지역민들이 명목상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 영주들의 권위가 부상했고, 영주가 자기 영토 내에 교회를 건축하고 사제의 급료를 지불하는 개인소유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후일 교구체제(parochial system) 뿐 아니라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궁내대신에 불과했던 카롤링이 권력을 장악하여 카롤링(Caroling) 왕조(751-888)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농업이 사회의 주 생활양식이 되었고 소규모의 자작농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대토지(大土地)를 소유하는 지주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중세 봉건사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황권과 세속권과의 대립도 노정되었는데, 그 한 가지가 8세기 성화상(聖畫像)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다. 황제 레오(Leo) 3세는 성상 철거령을 내리고 성상예배를 금지하였는데(726년) 이에 맞서 교황 그레고리 3세(Gregory)는 731년 성상반대자를 파문하였다. 이것이 ‘성화상 파괴 논쟁’(Iconoclastic Dispute)으로 알려진 대 논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자 황제는 이태리 남부와 시실리를 로마교구(교황 치하)에서 콘스탄티노플 교구로 옮기려고 하였다. 이때 교황은 황제에게 강력하게 항의, 반대, 불복하였

1) *An Introductory History of France* (Murry, 1918), 5.



다. 당시 로마교회는 롬바르트(Lombard)족의 위협 하에 있었으므로 황제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교회(교황청)가 황제와 대결하려면 롬바르트족으로 부터 보호를 황제 아닌 다른 이에게서 찾아야 했다. 그래서 교황은 프랑크족과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프랑크족의 찰스 마르텔(Charles Martel)과 그의 아들 페핀(Pepin, Pipin)을 거쳐 가면서 교회와의 타협이 진행되었고, 페핀의 아들 샤를레망(Charlemagne, 742-814, 재위기간 768-814) 때는 분명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샤를레망은 50여회<sup>2)</sup>의 전쟁을 통해 서쪽으로는 스페인(사라센)을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의 롬바르트족을 치고, 동쪽으로는 색슨인과 싸워 이들을 복종시키고 교황권 하에 두어 이들 지역을 기독교화 하였다.

이런 협력관계에 있던 AD 800년 크리스마스날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레오(Leo) 3세는 샤를레망에게 ‘로마황제’의 칭호를 수여하고, 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하였다. 이 정치적인 배려는 획기적인 일로서 향후 계속된 교회와 국가 간의 보다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제휴의 시작이 되었다. 즉 교권과 속권의 거듭된 제휴, 타협, 대결의 시작이었다.

중세시대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에서 극적인 사건이 서임권(敍任權) 투쟁이었다. 서임권과 관계된 대립은 근본적으로 교회직분을 정치적 권력의 도구로 이용코자 한데서 비롯되었다. 클루니 수도원 출신인 힐데브란트(Hildebrand, 1021?-1085)는 그레고리 7세라는 이름으로 1073년 교황이 되었는데 그는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었다. 12년간(1073-1085) 재임하였던 그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고 황제나 귀족들에 의해 행해지던 성직매매(Simony)와 평신도(황제)의 성직 서임(수임)권을 반대하고 교회의 독립성과 교황의(황제에 대한) 우위권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통 ‘서임권 논쟁’(敍任權 論爭, Investiture Controversy) 또는 ‘서임권 투쟁’(Investiture Struggle)이라고 하는데, 그는 관행으로 시행되던 황제의 성직 임명권을 반대하고 교황에 의한 성직수임을 주장했다.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었다. 따라서 교황과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 1056-1106)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충돌은 ‘카놉사(Canossa)의 굴욕’이라고 일컫는 소위 카놉사(Canossa)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와 교회의 심각한 대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대립은 하고 칼리스투스 2세 때 와서 종결되는데, 그는 하인리히 5세와 화해하고 서임권 논쟁을 해결했다. 이때가 1122년이였다. 이해 9월 23일에 보름스(Worms)에서 모인 교회회의에서 정교 협약(Concordatum)을 체결했다. 교황의 이름을 따서 ‘칼리스투스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보름스 정교 협약’은 황제가 교황과 교회에 양보하는 부분과 교황이 황제에게 양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황의 양보 사항은 하인리히 5세에 국한되어 있어 황제가 사망한 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

황제는 성직 서임권을 포기하고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법에 의한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자유로운 주교 임명을 보장하였다. 교황은 하인리히 5세에게 주교 선출 장소에 입회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였을 때에 주교 지명권을 부여하였고 황제로부터 세속 재산과 속권을 부여받은 주교는 황제에 대한 봉사 임무를 갖게 하였다. 따라서 서임권이 교회의 영적 서임권과 국가의 세속적 서임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sup>3)</sup> 이 정교 협약은 독일에서는 밤베르그 제국 의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라테라노 공의회(1123)에서 추인되어 이로써 ‘구레고리우스 개혁’의 주요한 문제인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 논쟁’은 종식되었다.

2) 필립 샤프에 의하면 그의 정복전쟁은 53회가 넘었다고 한다. P. Schaff, 239 참고.

3) 이 때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으로서 영지를 받게 될 때는 황제가 영주의 자격으로 홀을 주어서 이를 임명하고 감독의 자격으로는 교황이 반지를 주어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전에는 황제가 반지를 주어서 마음대로 감독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② 그러나 감독을 선택하여 임명할 때는 황제 또는 그 대리자가 임석해야 하며 임직식을 거행할 때는 황제가 앞서고 교황이 그 뒤를 따르는 순서로 되었다. 그러므로 인물 선택의 권한은 교회에 있더라도 황제가 제후의 권세로 그의 임직을 거부할 때는 감독으로 세워질 수 없었고 영토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교권과 황제권의 대립이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켄터베리 대주교토미스 베킷과 영국왕 헨리 2세(1154-1189년)의 대립, 교황 인노센트 3세(Innocent III, 1198-1216)와 영국왕 존과의 대립이었다. 인노센트 3세(1198-1216)는 황제권의 모방(Imitatio Imperii)으로서 절대권력(Plenitudo Potestatis, 전권)을 행사했는데, 그는 “교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통치권은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며 왕중왕이므로 군왕의 심판자가 된다. 교황은 태양이고 제국은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여 황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했다. 인노센트 3세는 자신의 위치를 primus et summus magister et princeps ecclesiae 라고 했고, 그 근거로 마16:18, 요1:42, 20:23, 고전4:4을 들었다. 그는 프랑스 왕 필립 2세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한 일을 승인하지 않고 다시 본처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리고 영국 왕 존이 교황의 명에 따라 켄터베리 대감독으로 취임한 스티븐 랭톤을 승인하지 않자 인노센트 3세는 1209년 영국 왕을 파문에 처하고 그의 영토를 몰수하였다. 이렇게 되자 영국왕 존은 교황에게 굴복하고 사죄를 간청하였다. 이에 교황은 1213년 복권하여 주고 영토를 되돌려 주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존을 실지왕(失地王) 존이라고 부른다. 교황과의 싸움에서 패한 그는 권위를 잃었고, 1215년에는 왕권을 제한하는 문서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65개조로 되어 있는 이 문서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페이스 8세(Boniface VIII, 1294-1303)는 그레고리 7세, 인노센트 3세와 동일한 이념을 가졌던 교황이었으나 그의 시대에 교황권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불란서 왕 필립 4세와의 대결에서 패배했다. 13세기 말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1302년 교황의 교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Unam Sanctam)를 무력화시켰다. 보니페이스의 후계자 베네딕트 11세(1303-4)때부터는 교황권이 약화되고 불란서왕의 영향 하에 있게 되었다. 결국 1309년 교황(베네딕트 11세의 후계자인) 클레멘트 5세(1305-1314)는 교황청을 아비뇽(Avignon)으로 옮겨 1377년까지 약 70년간 지내게 되었다<sup>4)</sup>. 이 기간을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기’(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Papacy, 1309-77)라 부른다. 이기간 동안의 7명의 교황은 전부 프랑스인이었다. 1378년부터는 교황청이 아비뇽과 로마로 분열되어 2사람의 교황이 각기 정통성을 주장하였는데, 이 기간을 교황청의 대 분열(1378-1417)이라고 말한다. 이 교회분열을 통해 하나의 교회(Universal Church)라는 관념이 사라지고 민족교회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황권이 몰락하고 분열하게 되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회회의를 통해 교황권의 분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보통 개혁회의, 곧 콘질리아(Conciliar) 운동(1409-1449)이라고 부른다. 콘질리아 운동은 교회회의(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황이 아니라 교회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했는데,<sup>5)</sup> 이것은 교황의 무오성과 절대권을 신앙하던 큐리얼리즘(Curialism)과 정반대의 주장이었다. 교회회의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후일 성경이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말하는 중요한 전거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중세기는 교회와 국가, 혹은 교황권과 황제권은 타협과 제휴, 대립과 투쟁의 기간이었고, 교회의 국가 지배나 국가의 교회 지배 양자는 ‘교회와 국가’간의 바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 주었다.

## 2. 종교개혁과 ‘국가와 교회’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16세기 개혁자들은 무엇이 국가와 교회의 바른 관계인가에 대해 고심했고, 그

4) R. Boethner, *Roman Catholicism*, 427ff.

5) 교황무오론, 혹은 교황지상주의를 큐리얼리즘(Curialism)이라 하고 이에 대한 대체주장을 콘질리아주의라고 말한다. 즉 교황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큐리얼리즘은 콘질리아리즘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콘질리아 운동은 파리의 존(John of Paris)에 의해 시작되었고, 파두아의 마르실리오(Marsilio of Padua), 윌리엄 오캄(William Occam)에 의해 발전되었다.



런 일단의 고뇌가 후에 살펴볼 개혁신교회의 신조에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의 입장이 있어왔다.

## 몇 가지 유형

첫째는 교회 지상주의(clericalism)인데, 이것은 국가를 교회의 일부분으로 보고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입장이었고, 가톨릭의 견해였다. 이런 입장을 황제교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가 시민사회에서도 권위(civil authority)를 강조한다.

둘째는 국가 지상주의(Erastianism)인데, 교회를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을 에라스티안주의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스위스의 철학자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의 견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며, 국가가 교회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교회(성공회)가 이런 입장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배타주의, Total Separation)인데,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초기 기독교회의 태도가 이러했다. 이것은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며,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재 침례파도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국가와 교회의 통합론(Unity)인데, 이런 형태는 4세기 이후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그룹이 재세례파였다. 이런 형태는 교회를 속화시키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인 동시에 국가도 본래의 신적 기원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 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런 인식은 초기 기독교에서 보는 바처럼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라는 분리모델도 이상적이지 못하고, 중세교회의 경우처럼 국가와 교회의 일치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다.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도 이상적이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런 인식에서 국가와 교회간의 바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가 중요한 논점이었다.

## 루터

루터의 입장은 최초의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서인 1530년에 간행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제16항에서 취급되었다. 즉 이 16장에서 국가와 이 세상의 지배, 관헌 혹은 위정자의 문제가 취급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점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세상 관헌과 통치와 법률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설립된 선한 질서라는 점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이상 관직 취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헌이 되고, 왕후나 재판관의 직무에 앉을 수 있고, 또 제국의 국법 및 그 외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집행하고, 판결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검으로 벌하고, 올바른 전쟁을 지도하고, 전투에 종사하고, 또 매매를 하고, 주어

6) 에라스투스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바젤에서 신학을, 볼로냐와 파두아에서 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1558년에는 의사이자 하이델베르크대학 의학교수가 되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에는 카스퍼 올리비아누스의 영향으로 강력한 칼빈주의적 정치체계가 권장되고 있었다. 신학적으로 쾰빙글리적이었던 에라스투스는 이런 견해를 반대하여 하이델베르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6년 후 에라스투스는 죽고 에라스투스의 미망인과 결혼한 G. Castelvetro는 에라스투스의 유작을 Explicatio gravissimae quaestionis utrum excommunicatio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책의 영어역본은 1659년 The Nullity of Church Censures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런 견해는 영국에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다. 이미 후커(Richard Hooker)는 세속권력의 절대권을 그의 Ecclesiastical Polity(1594)에서 주창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장기국회의원 중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회의 대표(divines) 중에서 예컨대, Selden, Lightfoot, coleman 등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의 교회 지배권을 말한 이들이 있었다. 영국교회(성공회)는 감독이 왕에 의해 임명되고, 주요예배 의식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에라스티안 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진 선서를 행하고, 재산을 보유하고, 결혼 등을 할 수 있다 점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관헌에 복종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모든 행위의 사항에 대하여, 그 명령과 법에 순종해야 한다. 넷째, 그러나 관헌의 명령이 죄를 범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람에게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사도행전 5:29).

1537년에 작성된 루터의 쉬말칼덴 신조는 신성로마황제 칼5세의 요청으로 개신교의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작성된 신조인데, 1537년 이탈리아 만투에서 열리는 교회 회의의 앞두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 개신교에 호의적인 삭손의 선재후가 루터에게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글을 요청했다. 이때 루터는 병석에 있었는데, 1장서 3장 3항까지는 친필로 쓰고 나머지 16항까지는 구술로 썼다. 이 글에서 루터는 간결하게 개신교의 입장을 밝히고 로마교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 글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제2장 4항에서 교황을 비판하는데, 특히 교황을 “가장 자비로운 주”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하고, “교황이 세상권력까지 가진 것은 악마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가 세속까지 통치해야 한다는 교황의 절대권에 대해서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변증서(1531)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칼빈과 장로교제도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첫째는 국가 혹은 국가권력과 의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건설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와의 정당한 관계의 정립은 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 혹은 시의회 등 국가권력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체도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질서와 훈련, 치리를 위해서도 교회정치 제도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선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Papism)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는 에라스티안주의(Erastianism)도 잘못이다. 또 마키아벨리와 같이 국가권력을 절대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재세레파처럼 국가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칼빈은 동의하지 않았다. 칼빈은 영적 질서인 교회와 함께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라고 보았다(롬13:1ff.). 단지 국가라는 질서는 결혼제도와 같은 창조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은혜’의 제도라고 보았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고,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방(領邦)교회로 발전하였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따르면서도 여기서 진일보하여 양자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고 양자는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봄으로서 국가의 교회지배나, 교회의 국가 지배, 그리고 교회와 국가 양자를 분리하여 이해한 재세

7) 권징에 있어서 특히 출교권(黜教權)의 문제로 칼빈과 시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문제로 제네바 시의회는 1538년 4월 칼빈과 파텔의 추방을 결의하기까지 했다. 취리히의 개혁자인 쾰링글리(Zwingli, 1484-1531)는 출교권이 교회에 있지 않고 정부, 곧 시의회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후계자인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4)도 출교권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보아 취리히 교회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권징권은 교회에 속하며, 교회의 고유한 과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부셔(Martin Bucer, 1491-1551)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도덕적인 권징(moral discipline)을 교회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하였고, 가장 중한 권징인 출교는 정부가 아닌 교회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셔는 이미 1527년에 출판한 「마태복음 주석」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감당하려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레파의 견해를 반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교회정치에 있어서 어떤 정치체도가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로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처리에서 개별 교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느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기구라고 보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은 것을 기억하라.”에서 ‘장로의 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제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는 비록 ‘장로제’ 혹은 ‘장로정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이미 장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론, 예배론, 성찬론에 있어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인 마틴 부서(Martin Buce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장로교 정치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부서는 1538년 「참된 목회에 관하여」(*Von der waren Seelsorge*)를 출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창이었다. 칼빈은 이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입었고, 부서가 1536년에 출판했던 「로마서 주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판(1539년 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회중정치는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 형태로서 지역교회의 자율성 (곧 목사의 청빙, 예산의 집행, 치리의 자율적 집행 등)과, 교회와 교회 사이, 목사와 목사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의 계층구조도 반대한다. 이들은 교회연합이 계층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연합을 반대하고 개교회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는 회중교회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갖는다. 이것이 회중교회 제도와 다른 점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장로교 정치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 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지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un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권력과 독립하여 교회의 직분자(특히 치리를 하는 직원으로서 목사, 교사, 치리 장로)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장로제의 3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7)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1643년 7월 121명의 영국교회 내의 청교도 목사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장로교 사상의 소유자들이었고, 약간 명의 회중교도와 두 세명의 감도교회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30여명의 평신도 국회의원과 스코틀랜드교회가 파송한 6명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교회정치제도였다. 이 문제에 대해 약 한달 동안 논의하면서 장로교 정치가 과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치제도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장로교 정치제도는 장로교회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 혹은 위정자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것은 제23장이다. 23장은 4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하나님은 지상에 세속 정부를 세우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1항).
2. 하나님은 공직자에게 무력사용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벌

8) 흔히 장로제의 제3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평등성’은 1646년 12월에 발행된 「교회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에서는 언급이 없다. 도리어 그것은